

심 의 위 원 회 소 견 서

약사법 제68조, 제68조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규정에 의거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는 심의 신청된 의약품 광고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수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본 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보고하게 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의 조치하게 되는 바 통보사항대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번호 : 20240902-0141

광고심의필 : 2024-1733-001101

일 자 : 2024-09-02

업 체 명 : (유)옥시레킷벤키저

대 행 사 : (주)달링프로덕션

제 품 명 : 개비스콘페퍼민트현탁액(방송 / TV)

수정(또는삭제)문구 또는 표현	관련법규 및 규정(사유)	판정
○특이사항 없음.	※ 심의위원회소견서 상단의 관계법령 및 기재사항, 협회 공지사항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

- 참조 : ① **적 합** : 광고물에 심의필번호 및 표시사항을 기재한 후 즉시 광고집행이 가능합니다.
- 적합광고물은 임의 수정이 불가능하며, 단순한 변경의 경우 1회에 한해 자구수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수정적합** : 심의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하면 협회가 이를 확인하여 적합처리합니다.
③ **수정재심** : 심의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하면 심의위원회가 이를 다시 심의합니다.
④ **부 적 합** : 심의받은 광고물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신규로 심의신청합니다.
⑤ 심의위원회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제60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사유를 명시한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광고심의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약사관계법령 개정이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재심의 필요 사유가 발생한 광고물은 재심을 받아야 합니다.

□ 주의 : 심의필증이 없는 광고물은 무단게재 광고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되어 행정조치 됨.

※ 심의를 받은 모든 광고물은 아래 내용을 표시한다.(의약품광고사전심의규정 제14조)

- 광고심의필문구 (광고심의필 : 0000-0000-000000 광고심의번호 14자리)
- 경고문구
 - 공통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진후제(116), 최토제·진토제(235) : 졸릴 수 있으므로 운전 등 기계조작 주의
 - 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329) : 용법·용량 허가사항대로 명시
 - 사전피임제 (254) :
 -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장기 사용할 경우 주기적으로 병·의원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두통이나 메스꺼움, 혈전, 질 출혈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SNS 등을 통한 추천·보증등에 관한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
- 표시 방법
 - 경고문구의 크기, 노출 시간 등은 해당 광고물 크기 및 광고 내용의 구성 등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구성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는 해당 게재물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본문과 구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본문의 글자보다 크거나, 글자색을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4. 09. 10.

한 국 제 약 바 이 오 협 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장

